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75호
- 나. 제출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 2.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위원회로 변경 및 정의 재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명시(안 제5조).

라. 위원장 직무 및 정례회의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

#### 4.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 사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기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신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